

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

1. 과세방법

- 비과세대상과 무조건분리과세대상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합산 안됨
- 위 외의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여부 판단

1) 판단대상 금융소득

- 무조건종합과세(A): 항상 종합과세
- 조건부과세(B): 무조건 종합과세와 합하여 2,000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여부가 달라짐.

※ 조건에 따른 종합과세 금액

〈조건 1〉 “ A+B ” > 2,000만원: A와 B를 모두 종합과세

〈조건 2〉 “ A+B ” ≤ 2,000만원: A만 종합과세하고, B는 분리과세

2) 출자공동사업자 배당: 종합과세 되지만 2,000만원 초과여부 검토 시 고려 x

2. 금융소득의 구분

1) 주요 비과세대상

- 공익신탁이익
- 2014년까지 가입한 녹색예금의 이자 및 녹색투자신탁의 배당, 2014년까지 발행한 녹색채권 매입 발생이자
- 2015년까지 가입한 재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
- 2012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
- 노인,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 및 배당
- 비거주자(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제외)가 2013.1.1부터 2015.12.31까지 가입한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환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행하는 이자

2) 무조건 분리과세대상

구분	원천징수 세율
<p>다음의 장기채권 이자로서 분리과세 신청한 경우(if분리과세 미신청 시-)조건 부과세(14%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2.12.31까지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 - 2013.1.1이후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 매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 	30%
비실명 금융소득	38%, 90%
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	기본세율
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입찰 법원 보증금 등 이자소득	14%
APT관리사무소 등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	14%

2) 무조건 분리과세대상_계속

구분	원천징수 세율
2014.12.31까지 발행된 7년 이상(2009년 이전 발행분은 15년)의 사회기반 시설채권의 이자소득	14%
선박투자회사 배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분 배당 - 액면가액 1억원 초과 보유주식분 배당 	5% 14%
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,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, 부동산집합투자기구, 부동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분 배당 - 액면가액 3억원 초과 보유주식분 배당 	5% 14%
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·배당소득	9%
기타 법에 정한 것	

3) 무조건 중합과세대상

- 국외 금융소득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
-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

4) 출자공동사업자 배당

2,000만원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중합과세(원천징수세율: 25%)

5) 조건부과세대상

위 1) ~4)를 제외한 금융소득(원천징수세율: 14%, 단,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%)

3.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

-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시 기본원칙

$$2,000\text{만원} \times 14\% + (\text{과세표준} - 2,000\text{만원}) \times \text{기본세율}$$

즉,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2,000만원까지는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될 뿐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(14%)를 적용하므로 실질과세효과는 분리과세와 동일함.

4.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특례

(1) 2,000만원 초과시 산출세액: $\max(\textcircled{1}, \textcircled{2})$

① $20,000,000 \times 14\% + (\text{과세표준} - 2,000\text{만원}) \times \text{기본세율}$

② 비교세액(실제로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의 세액)

(2) 2,000만원 이하 시 산출세액: 위 ‘(1)의 ②’ 를 산출세액으로 함. (단, 2,000만원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함)

제4절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

1. 배당가산(Gross-up)제도

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인에 배당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.

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Gross-up제도이다. 이 방법은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상당액(Gross-up: 배당소득의 11%)을 배당소득에 가산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해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방법이다.

2. 배당가산제도의 적용요건

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임과 동시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이어야 함. 또한 종합과세 배당소득 중 2,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.

3. 배당가산 제외 배당소득

위의 배당가산제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 다음과 같다.

- ①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
- ②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14%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
- ③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